

매장유산의 발견·발굴 사실 공고 결과서

1. 공고사항

가. 공고기간

나. 공고 방법

2. 공고 내용

가. 유적명

나. 유물명 및 수량

다. 조사 지역

라. 조사기간

마. 조사기관

바. 보관처

3. 공고 결과

가. 소유권 주장자

나. 소유권 주장 사유

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의 공고 결과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

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 귀하